

保險 Pooling System과 強制保險



김 관 치
(본협회 기획조정실장)

4. 강제보험의 개요

강제보험(Compulsory insurance)이란, 법률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Any form of insurance which is required by law)으로서, 자본주의의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자본주의의 이념에 위배되는 제도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 생각이며, 세계 각국에서는 많은 종류의 강제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강제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장급부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실업연금 등)

○빈민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적 부조제도

○법률로 일정 조건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급여에 의하여 사회보장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험(강제보험)

영국을 비롯한 북구제국은 사회보장제도의 선진국으로서 그 역사가 깊고 제도의 종류도 다양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한 나라들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고의적인 취업기피현상 등이 일어나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이 되는 등 사회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Milton Friedman(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

많은 학자들은 영국의 공공지출이 국민소득의 50~60%를 넘는다는 사실을 들어, 영국의 장래가 어둡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풍부한 국가재력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가지고 선발로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하여온 국가들에서는 최근 심각한 국가경제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반면, 후발로 국가재정의 특별한 지원없이 강제보험제도를 채택시행하여온 국가들에서는 그 분야의 사회복지가 비교적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강제보험은 그 종류와 가입대상 등이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그 나라에 따라 사회적 여건과 환경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다음의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입의무자 자신의 재산과 신체손해에 대비한 보험(화재보험, 상해보험등)

○어떤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재산과 신체에 손해를 입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이런 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각종 배상책임보험)

5. 외국의 강제보험제도

강제보험은 경제선진국들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보장책의 일환으로 채택시행되고 있다. 보험종목은 주로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되어 있으나 가입대상별 특성에 따라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보험종목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유럽」 주요국가들의 나라별 강제보험의 수효를 보면 아래와 같다.

나라별	불란서	벨기에	스위스	서독	이태리
수효(종)	66	37	23	22	10

〔자료〕 Insurance in Europe(1981)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나라 특수건물의 화재보험을 강제화한 근거법률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많은 참고가 되었던 「스위스」의 강제·화재보험제도와 「서독」의 것을 알아 보고자 한다.

가. 스위스

화재보험에 있어서 공영적 성격을 띤 강제보험제도가 최초로 「스위스」에서 시작된 것은 1805년이다. 남부 독일의 영향을 받아 Aargau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그 후에 여러 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1800년대에 이미 17개주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상호부조의 기금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차츰 입법화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보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체도로 운영되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현재 26개주 가운데 22개주에서 화재강제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화재보험에의 가입대상은 건물 및 동산으로서, 건물은 22개주에서, 동산은 8개주에서 그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다.

이런 강제보험은 대부분 주정부가 직접 주화재보험취급기관(Cantonal Fire Insurance Institution)을 통하여 일괄취급하고 있다. 동 기관의 주요 취급업무를 보면 아래와 같다.

- 법에서 위임된 관계보험업무
- 보험요율의 제정시행
- 부보물건의 손해방지활동
- 소방대, 소방관, 방재기술자에 대한 교육
- 건물허가시, 방재에 관한 사항의 심의처리

그리고 수입된 보험료는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손해보상:55%, 방재활동보조비:20%, 사업비:10%, 세금:5%, 기타:10%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1983년도에 화재강제보험의 수입보험료는 562million SFr.으로 「스위스」 전체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이고, 화재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에서 이런 강제보험제도가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소의 부담으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고 직접적으로 방재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하나 같이 이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서독

서독에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화재보험에의 가입이 강제화된 것은 「스위스」보다 훨씬 앞 선 17세기경 부터 이루어 졌다.

이러한 화재보험은 주별로 법률에 의하여 그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보험은 전국 11개 도시에 지정분포되어 있는 국영기관에서 독점적인 형태로 취급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국영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주의 경우에는 주정부가 특정의 보험취급기관을 지정하여 이의 취급에 일원화를 기하고 있다.

6. 우리나라의 특수건물 강제보험과 Pooling System

우리나라의 특수건물에 대한 강제보험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가 급격히 성장발전함에 따라 화재발생빈도가 많아지고, 재산 및 인명의 피해규모가 대형화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에는 신속한 복구와 적절한 보상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이러한 제도는 강제보험이 필요해진 다음의 원인적 사고 발생으로 1973년도 대통령각하 연두순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및 다수인이 집합, 출입하는 건물의 의무적인 화재보험에의 가입과 화재예방 안전점검제도를 확립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루어 졌다.

〈표 5〉 강제보험이 필요해진 원인적 사고(예)

구 분	발 생 시	화재원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대연각호텔	1971. 12. 25	프로판가스 취급부주의	사망: 163명 부상: 63명	약 20억원
대왕코너	1972. 8. 5	“	사망: 6명 부상: 61명	약 3.5억원
시민회관	1972. 12. 2	누 전	사망: 33명 부상: 76명	약 3억원

우리나라의 특수건물 강제보험은 화재위험으로 부터 국민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보호와 건물주에 대한 보상책임의 법률적인 부과를 목적으로 이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의 형태로 남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강제보험을 pool체제로 운영하게 된 배경을 보면 ① 강제보험의 경쟁적 인수에 따르는 부작용의 배제 ② 위험의 적정한 관리와 합리적인 분산의 필요성 ③ 보험산업의 건전육성과 보험회사경영의 질적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는 보험기업이 갖는 사회적인 책무의 구현 수단의 하나로서 방재활동(안전점검)을 보험업무와 일원적으로 한 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보험과 위험관리의 연계성을 확립, 국민생활의 안정도모를 위한 이상적인 선진형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방재활동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업무는,

“점검실시→위험부위 색출→소방관서등에 통보→건물주에게 불량부위 개수명령→개수” 등의 절차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특수건물의 위험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최근 5년간의 평균손해율이 21.1%에 불과한 것을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특수건물 강제보험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1977년도에는 전체손해보험시장의 7.5%이었던 것이, 1984년도에 3.2%로서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여하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에 대한 강제보험 pool과 안전점검(위험관리)을 이상적으로 연계시켜 운영함으로써 손해율의 현저한 감소를 통한

국가재산의 보호와 보험계약자(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방재시설의 개수율 향상으로 국가방재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임법취지에 부합한 효과적인 방재활동의 수행과 강제보험pool의 운영배경의 충족으로, 본래의 예상성과 이상으로 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국제적 수준의 “방재시험소”를 설립하는 등, 보험에서의 위험관리의 과학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7. 결 론

이상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강제보험은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전통과 관습, 특성 등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강제보험의 취급기관을 일원화하여 독점 내지는 pool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건물 강제보험은 보험 pool체제의 운영과 방재활동인 안전점검을 연계시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방재적 측면과 보험기업적 측면에서 어느 나라 보다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보험시장개방 압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좋은 제도가 혹시라도 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더욱 확고하게 정착·발전할 수 있는 방책의 마련이 속히 이루어 질 것을 간절히 바란다. <끝>

세계의 주요보험사고 일지

(보험공사 자료)

일 자	국 가	내 용
'85. 12. 12	캐 나 다	시나이 주둔 미국 MNP군대 101공수부대가 대절하여 카이로- 캠프벨요새 간 운항차 이륙하려던 DC-8-63 CF, N-950 JW기가 활주로 끝 400m 지점에서 추락하여 화재발생함(뉴펀드랜드, 산다공항). 250명의 군인과 8명의 민간승무원 모두 사망. 기체는 전손.
12. 21~22	이 란	양모 저장실과 200개 소매상점이 들어있는 콤플렉스(라시트지역)에 화재 발생. 총 추정손실액은 미화 7.28백만「달러」임.
12. 30	미 국	1985년중 손보산업에서 Catastrophe 손해액이 5,500백만「달러」이었는데 이 중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한 것이 2,800백만「달러」를 차지하였음. 부자수익금 19,700백만「달러」를 감안하지 않을 때 25,200백만「달러」의 영업손실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86. 1. 13	불 리 비 아	폭우로 인한 홍수로 30,0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음. 약 2,000개의 집이 파괴되었고 8,000헥타아의 농경지가 유실되었음.
1. 21	영 국	런던 언더라이터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의 보고에 의하면 1985년중 사고로 사망한 1,500명 이상의 승객의 친척들에 의해 제기된 배상책임 클레임의 보유자 유보액이 미화 500백만「달러」에 달하고 있음.